

GANGJIN 

Web Contents



목차

목차	2
조상땅 찾기	3
조상 땅 찾기 안내	3
신청자격 및 서류	3



조상 땅 찾기 안내

『조상 땅 찾기』 제도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한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파악하지 못하여 조상의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을 상속인에게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드리는 업무임.

신청자격 및 서류

- 법적근거: 「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」 제11조
- 신청인: 상속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위임인
- 신청서류
 -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
 - 제적등본('07년 이전 사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.기본증명서('08년 이후 사망)
 - 신분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증 등 (위임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)
- 신청방법: 상속인 또는 위임인이 직접 방문 신청(우편.유선 접수 불가)
- 신청시기: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된 이후 (사망진단서만으로는 정보 제공 불가)
- 신청장소: 강진군 민원봉사과 지적팀 또는 시군구 조상 땅 찾기 담당 부서

GANGJIN
Web Contents

